

# 불평등·양극화 해소 /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2021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 1. 2021년 임금정책 기초

- 민주노총은 ①악화되고 있는 임금 및 소득격차, 불평등 구조 해소 ②저임금노동자 비중 일소 ③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④코로나19 재난시기 일하는 모든 이들의 생계보장을 목표로 2021년 임금정책을 수립함.
- 특히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확인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저임금노동자, 취약계층에 위기가 집중되고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요구와 경로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기 제시해온 ‘연대임금\*’, ‘생활임금\*\*’ 쟁취라는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보와 산업(경제)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함.
  - \* 노동유연화로 인해 심각해진 노동자 내부의 임금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확립되어진 원칙. 연대임금의 원칙은 조합원 대표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조직으로서 옹골게 서기 위한 방향임.
  - \*\* 자본의 생산성 논리에 따른 시장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함.
-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 혹은 억제로 기업살리기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허황된 주장에 맞선 공세적인 임금인상이 필요함.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소득증대가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이자, 소득증대=소비진작으로 경기부양에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노동자 임금의 대폭인상이 필요함. 적극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미조직비정규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이 만들어낸 안전망(복지)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기업이 아닌 지역·업종 차원의 안전망 구축 및 교섭구조를 확보\*함.
  - \* 기업별 지급여력과 기업복지에 의존해 온 한국의 임금협약 구조에서 재난시기에 대다수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움, 따라서 개별기업의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업종내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하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업종별 교섭구조 확보까지 이어갈 수 있음.

## 2. 임금동향 문제점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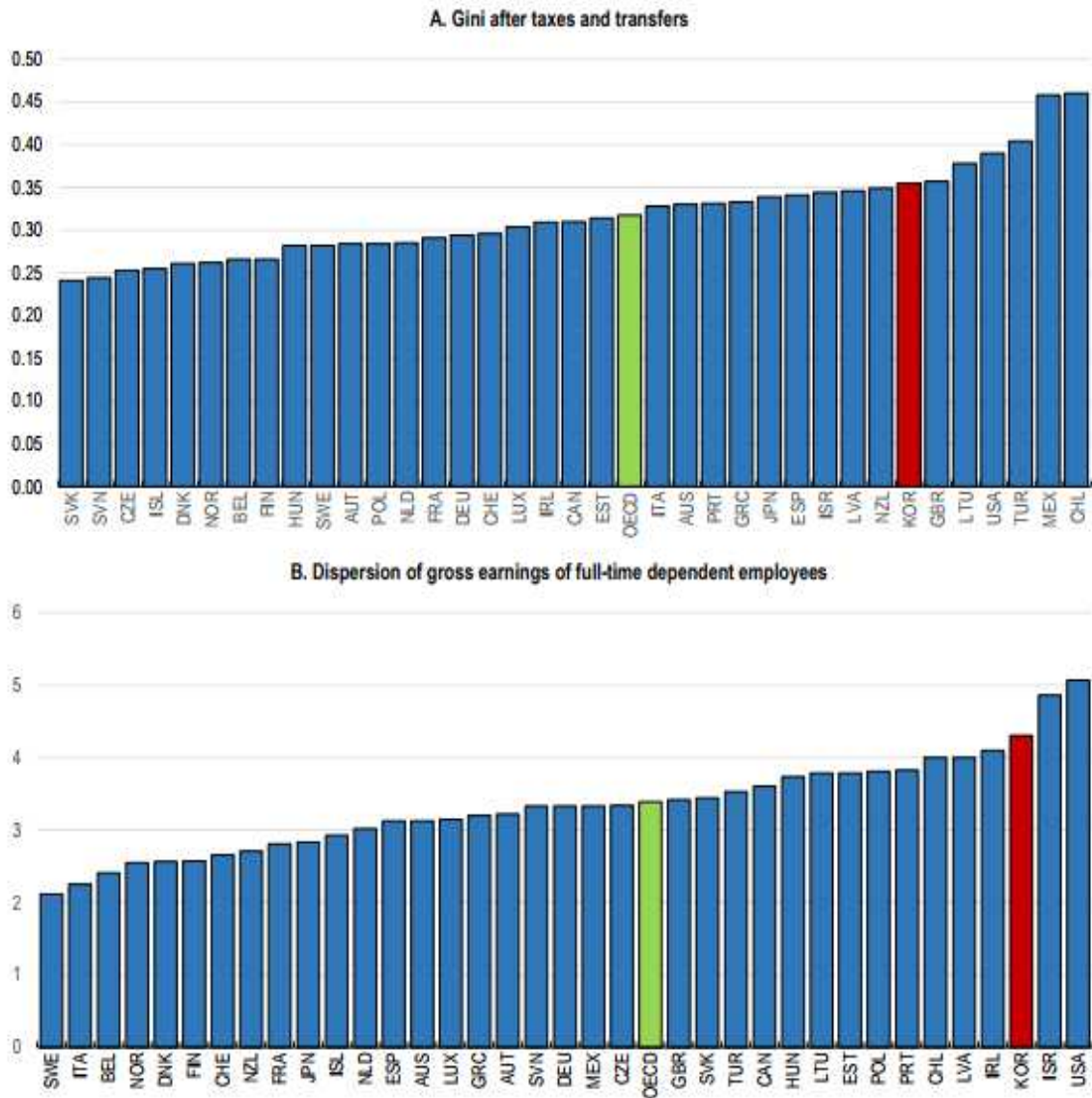
### 1)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불평등·양극화

#### (1) 소득불평등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

- 지난해 8월 OECD가 발행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국가임을 밝힘. OECD는 ‘그간 한국이 달성한 경제 성장의 과실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하며 ‘한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로 인해 전체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산업화 초반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큰 폭의 소득 증대를 경험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성장의 포용성이 약화되었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 후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 고 한국의 불평등·양극화가 심한 상황임을 밝힘.

<그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는 한국



주: 전체 인구. 지니계수의 범위는 0(불평등 없음)에서 1(불평등 최대)까지. 총소득 분산은 임금분배 1분위 대비 10분위 비율.

자료: OECD, 소득분배(데이터베이스) 및 총소득 10분위 비율(데이터셋).

A. Gini after taxes and transfers: 세후 지니계수

B. Dispersion of gross earnings of full-time dependent employees: 종속적 전일제 근로자의 총소득 분산

출처 : OECD 한국경제 보고서, 2020.8

- 보고서는 코로나19위기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충분한 사회보험으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가장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함.
-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면서비스업

을 중심으로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생산과 저소득 가계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2020년 2/4분기 가계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을 통해 4~5분위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6~4.4% 감소한 반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7.2%나 감소하였으며, 3/4분기중에는 고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1분위 가구 소득은 10.4% 감소함으로써 코로나19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함. 한국은행은 이러한 양극화·불평등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이중구조 심화, 성장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안정기반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2) 노동자간 임금격차 심화

- 통계청이 2020년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를 분석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전 산업 시간당 임금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9년 8월 15,274원에서 2020년 8월 15,627원으로 353원 증가함.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7,368원에서 7,599원으로 231원 증가한 반면, 상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26,480원에서 27,632원으로 1,152원 증가함.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3.59배에서 3.64배로 증가함. 월 임금총액 평균값은 2019년 8월 264만원에서 2020년 8월 268만원으로 4만원 증가함.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89만원에서 80만원으로 9만원 감소한 반면, 상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4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함. 이에 따라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임금격차(P9010)는 5.39배에서 6.25배로 치솟음.

<표> 연도별 임금불평등

	월 임금총액(만원)					시간당 임금(원)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평균값	237	242	256	264	268	13,464	13,722	14,607	15,274	15,627
하위 10%	80	80	90	89	80	5,757	5,987	6,908	7,368	7,599
50%	200	200	210	230	240	10,788	11,513	11,513	12,434	13,040
90%	450	450	454	480	500	25,041	24,753	25,905	26,480	27,632
P9010	5.63	5.63	5.04	5.39	6.25	4.35	4.13	3.75	3.59	3.64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20. 11)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2020년 8월 기준 남성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의 임금은 72.7에 불과함. 남성정규직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면 여성정규직 75.2, 남성비정규직 63.0, 여성비정규직 51.8로 나타남.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며,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성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남성	15,741	15,878	16,781	17,410	17,788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10,555	10,996	11,870	12,618	12,924	67.1	69.3	70.7	72.5	72.7
정규직	16,795	16,698	17,523	18,064	18,484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9,312	9,676	10,400	11,360	11,615	55.4	58.0	59.3	62.9	62.8
(남)정규직	18,773	18,584	19,445	20,012	20,392	100.0	100.0	100.0	100.0	100.0
(남)비정규직	10,509	10,727	11,422	12,419	12,846	56.0	57.7	58.7	62.1	63.0
(여)정규직	13,278	13,412	14,247	14,831	15,330	70.7	72.2	73.3	74.1	75.2
(여)비정규직	8,284	8,804	9,556	10,471	10,562	44.1	47.4	49.1	52.3	51.8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20. 11)

### (3) 저임금노동자 434만명으로 코로나19시기 증가

- EU(유럽연합)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위임금(13,040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8,693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45만 명 가운데 355만 명(17.4%)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57만 명(4.1%), 비정규직은 299만 명(35.1%)이 저임금 계층임. 정규직은 20명 중 1명,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임. 이는 2017년 8월 21.5%, 2018년 8월 15.7%, 2019년 8월 15.8%로 감소하던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020년 8월 17.4%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40만 원)의 3분의 2’인 ‘160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45만 명 가운데 434만 명(21.2%)이 저임금계층임.

<그림>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20년 8월, 단위 : 천 명)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김유선 2020. 11)

## 2) 노동소득분배 악화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미달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초과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치는 4.37%인 반면, 노동자 명목임금상승률은 3.16%~3.43%에 그치고 있으며, 양자간의 격차는 0.93%p~1.21%p에 달함. 문재인정부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등 특수한 상황이 격차를 완화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지난 12년간 ‘임금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노동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악화된 상태로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최근 12년 간 경제지표와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추이와 격차**

(단위 : %, %포인트)

연도	경제지표			조사별 명목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명목임금인상률	
	경제 성장률(1)	물가 상승률(2)	(1)+(2)	고용노동부(A)	통계청(B)	(1)+(2) - (A)	(1)+(2) - (B)
2009	0.7	2.8	3.5	2.6	0.3	0.9	3.2
2010	6.5	3.0	9.5	6.8	5.2	2.7	4.3
2011	3.7	4.0	7.7	1.0	4.3	6.7	3.4
2012	2.3	2.2	4.5	5.3	3.7	-0.8	0.8
2013	2.9	1.3	4.2	3.4	3.8	0.8	0.4
2014	3.3	1.3	4.6	2.4	2.3	2.2	2.3
2015	2.8	0.7	3.5	3.0	2.9	0.5	0.6
2016	2.9	1.0	3.9	3.8	3.0	0.1	0.9
2017	3.1	1.9	5	3.3	2.4	1.7	2.6
2018	2.7	1.5	4.2	5.3	5.3	-1.1	-1.1
2019	2.0	0.4	2.4	3.4	3.3	-1.0	-0.9
2020	-1.1	0.5	-0.6	0.9	1.4	-1.5	-2.0
평균	2.65	1.72	4.37	3.43	3.16	0.93	1.21

(1) 경제성장률: 실질GDP성장률로서 한국은행 자료

(2) 물가상승률: 통계청 자료

(A)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자료. 2011년까지 상용직 5인 이상 월 임금총액, 2012년부터 통계 개정에 따라 상용직 1인 이상 월 임금총액 / 2020년 인상율은 1~11월 평균값

(B)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에 따른 1인 이상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는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상회해야만 노동소득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 3) 과제

#### (1) 재난시기 모든 이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생계보장 강화

- 전세계적 재난상황에 개별기업의 지급여력에 따라 고용과 소득이 보장되는 방식이 아닌 사회(국가)가 고용과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변화가 필요함.
-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의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미조직비정규노동자를 포괄하는 다양한 방식의 안전망을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임금 및 복지정책 개발

- 빈곤층과 부유층의 소득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저임금을 끌어올리고, 최상위 부유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소득제한 등의 정책을 개발해야 함.
- 불평등·양극화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과 연계한 최고임금제도 도입, 임금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산별임금협약(교섭) 보장,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적극적인 임금정책 및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함.

### 3. 2021년 민주노총 임금 요구(안)

#### 1) 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정액요구안 : 월 278,800원 이상 인상

-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2021년 임금인상 요구안 하한선으로 월 278,800원 인상
- 임금인상률은 저임금노동자 현실을 반영하여 정액임금 인상 이상으로 인상을 탄력적 적용

#### (1) 임금요구안 산출 근거

- 임금요구안 산출을 위한 기준임금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전산업 1인 이상 2020년 3/4분기 월평균 임금 3,573,883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 임금인상 요구는 한국은행(2020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 2021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전망치 각 3.0%, 1.0%와 노동소득분배 개선 1.2%(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인상률 차), 저임금노동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인상 요구분 2.6%를 반영한 7.8% 인상을 기준으로 함.
- \*  $3,573,883원 \times 7.8\% = 278,800원$

#### (2) 임금인상 요구 원칙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 및 연대임금 정책에 따라 월 278,800원 인상은 2021년 임금인상 요구의 하한선으로 제시함.
-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은 정액임금 인상을 기본으로 정률 및 +@를 요구할 수 있음(초과요구는 탄력적으로 적용).
- 다만,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실질임금 수준 유지 및 소득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정액 185,800원 또는 정률 5.2% 인상을 제시함.

#### (3) 임금요구안 산출을 위한 기준 검토사항

- 1인 이상으로 할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 노동자 임금(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약 75%) 이 누락. 반면, 5인 이상으로 할 경우 약 350만명 규모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임금도 누락.
-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으나 민주노총 조합원도 비정규노동자가 30%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노동자 임금요구안으로 상용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결국, 1인 이상 전체 또는 5인 이상 전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민주노총 요구안은 조합원 요구안이 아닌 2천만 전체 노동자 최소한의 요구’ 임.
- 따라서 1인 이상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을 임금요구안 산출을 위한 “기준임금” 으로 함.

조사명칭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유형	특징	
				장점	단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민간전산업	표본조사	- 월별조사로 시의성 있음. - 임금수준 조사가 핵심	- 노동자의 다양한 인적 특성 분석불가. 공무원 등 제외
임금결정현황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전수조사	- 수시조사로 시의성 높음	- 조사범위가 협소. 연초 타결률

조사	노동부	민간전산업	조사		저조로 자료의 대표성 낮음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 조사	- 가구의 소득 조사	- 사업체 특성이나 인별 임금에 대한 분석 불가
고용형태별근 로실태조사	고용 노동부	1인 이상 민간전산업	표본 조사	- 민간부분 인적특성에 다른 근로실태 파악	- 공무원 등 정부부문 임금노동자 제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 조사	- 모든 임금노동자 조사	- 임금 및 근로시간 상세내역 미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개요

조사범위 및 대상 : 농림어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  
 고용부문: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40,000개 표본 사업체  
 근로실태부문: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3,000개 사업체

## 2)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요구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① 사용자는 업종(혹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직접, 간접, 도급, 파견 등) 노동자의 임금을 업종(혹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 및 도급할 경우 본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6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대비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
- 도급(위탁)계약에 해당 업종(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저임금을 이유로 한 도급(위탁),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함.

## 3) 사회임금제도 강화, 노동시간-임금-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요구 : 노정교섭 실시

- 코로나19로 한국사회 전반의 취약성과 함께 자본주의의 모순이 밝혀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다른 양상과 차원임이 확인됨.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은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고용 및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인 인력 구조조정, 위기기업 퇴출 및 지원 등 기업 중심의 지원과 구조조정 방식을 답습하고 있음. 반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취약계층의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은 미비함.
- 이러한 대응방식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기의 심화를 넘어 한국사회의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복지제도를 넘어서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임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보편증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과 금융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특히 국가(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사용 목적을 저임금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 및 고용보장으로 명시하고, ‘탄소세’를 신설해 기후 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도 소득대체율 및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요율 인상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구간 및 세율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 코로나19로 촉발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만들 필요가 있음.

#### 4)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업종 차원의 노동복지 및 교섭체계 구축

- 연대임금의 일환으로 지역·업종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원-하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공동의 이익 증진 도모. 기업별 복지제도를 넘어서 지역 또는 업종 차원의 복지제도를 통해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모든 노동자가 함께 공유하고, 노동자 복지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관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일부 해소함.
- 임금인상 요구분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지역·업종의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의 참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식임. 중소기업(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부가 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어 중소기업(혹은 하청)의 참여를 유도하기 용이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지역·업종 차원의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음.
  - \*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 중에 있음. 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개, 2019년 31개였던 것이 2020년 상반기 116개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급증하였음. 이는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후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최저임금 요구(안) :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와 장바구니 물가 등을 반영하여 결정.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은 양대노총 협의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최저임금연대회의와 논의 후 의결단위를 통해 확정함.

<표> 최근 6년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 : 원, %)

구 분	시급(원)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인상액)
'21.1.1 ~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1.1 ~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1.1 ~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1.1 ~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1.1 ~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1.1 ~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 4. 민주노총 임금제도 개선 요구

### 1) 최저임금제도 개선

-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결정에 주요한 기준으로 가구생계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결정기준인 노동자생계비를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개정하고,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입범위 정상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삭감되거나 인상폭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산입범위를 정상화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급인 책임 강화)** 하청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위반시 도급인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도급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노·사의 의견이 대립되는 조건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공익위원 선출방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공익위원이 아닌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위원’으로 전락하였음. 공익위원이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을 근거로 노사간 의견을 조정하기보다는 ‘기계적 수치 조정’을 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 이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을 고려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폐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지역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 이로 인해 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됨. 따라서 해당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현행 법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또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대해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 이 역시 폐지가 필요함.
-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적용)**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 노동자(주15시간 미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초단시간노동자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년층 등 초단시간노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2)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 강화

- 현재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임금지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단, 과세소득 3억원 초과시 지원대상 제외)을 대상으로 노동자1인당 월 최대 8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음. 해당 제도를 통해 2018년 264만명, 64만 사업장에 2.5조원, 2019년 343만명, 83만사업장에 2.8조원 지원함.
- 30인 미만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의 규모를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1인에서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의 경우 해당 지원액의 상향이 필요함.(예시 5인미만 최대 20만원, 30인미만 15만원, 100인미만 8만원 등)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제도 등을 신설하는 요구를 공식화 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이들에게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상업용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주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와 비슷한 방식의 제도를 요구해야 함.
- 한계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폐업 및 도산하는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출 등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고통을 받아왔던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 등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공적채무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서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부채조정을 통해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3) 최고임금(연봉)제 도입

- 최고임금법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연봉)을 각각 최저임금의 0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연봉 21,543,720원). 반면 엔씨소프트 대표의 연봉은 184억

1,400만원으로 최저임금대비 850배를 초과하고 있음.

- 스위스는 연봉을 종업원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독일은 이사의 임금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산업·국가의 유사한 회사의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16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최고임금법률안을 발의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임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850배를 초과하는 것은 임금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부당한 자본의 폭력으로써 ‘슈퍼임금’은 최고위 경영자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임
- 따라서 국민의 균형성장,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 실현 취지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고임금 수준을 규제함.

**※ 자치단체 최고임금제 도입 중**

부산시의회: 2019년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통과.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 임원은 최저임금 6배로 제한.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통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로 권고 규정. 이 외에도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 시켰으며, 서울시, 대구시, 제주도, 충청남도, 성남시, 창원시 등도 조례제정 추진 중.
--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5)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노동시장 진입을 차별하는 등의 남녀간 차별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단순히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넘어 실제 유리천장, 노동시장 진입차별, 임금격차 등 부당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함.
- 또한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노동시장 최초 진입,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따른 고용변동 및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편적 정책 수립을 요구함.

**6) 포괄임금제 금지**

-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월 총액 임금을 미리 정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노동 등을 시킴으로서 노동자를 자본에 예속시키는 제도임.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는 제도임. 포괄임금제도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사용되었는데, 최근 규모와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보장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 편법적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도는 금지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고,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